

판례로 본 건설분쟁 사례 ⑪

자료제공 / 『알기쉬운 건설분쟁 사례 해설집』(건설경제 신문사 편)

▶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여부

| | |
|----|---|
| 쟁점 | 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은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지는가? |
| 판단 |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수급인의 공사시행에 관한 의무에 한정된다. |

◆ 관급공사 연대보증인 보증책임의 범위

관급 공사도급 계약의 연대보증인은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는 구체적인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계약법(및 지방자치단체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가?

대법원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의 의무는 선급금반환채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선급금반환채무에 대해서 보증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본다. 관급공사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시공보증에 한정되고, 선급금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 2009다36081 판결에서는 관청 공사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시공보증에 한정되기 때문에 수급인의 지체상금 지급채무 역시 보증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판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연대보증의 자격을 당해 공사에 관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고,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게 대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공사도급계약과 그에 관한 연대보증계약 내용의 일부로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계약 상대방이 불이행한 공사의 완성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서 금융기관의 보증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수급인의 공사 시행에 관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되고,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99다20773 판결)

[사례]

H건설은 A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도로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건설은 H건설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연대보증을 하였다. H건설은 선급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S보증보험사와 A를 위하여 선급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H건설의 부도로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S보험사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D건설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인 D건설은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응해야 하는가? 판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은 책임을 부정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구상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 민간공사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이와 같이 관공공사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지만,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사정이 다를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민간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관공공사 도급계약과 달리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다.

[판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청 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지만,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3다55134 판결)

▶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과 계약보증인의 보증책임 소멸 여부

쟁점

공사보증인이 수급인의 미시공 공사를 완성한 경우, 계약보증인의 선급금반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가?

판단

선급금반환에 대한 보증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 연대보증인과 계약보증인의 병존

연대보증인은 선급금반환채무에 대해서까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연대보증인은 수급인의 시공을 보증한다. 연대보증인은 수급인이 미시공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책임에 속하지 않는 선급금반환채무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보증 시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보증인의 선급금반환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판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이상 수급인과 그 계약보증인은 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또한 공사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완료하지 못한 공사를 마무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증인인 수급인의 공사 중단 후에 도급인이 공사보증인과 사이에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결국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보증인의 계약보증책임이 소멸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다13016 판결)